

노숙인 주거안정 지원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
사업위치	서울시 전역
총사업비	총 (국비) (사비) (보조율) (구비) 993,465천원 993,465천원 0%
사업내용	○ 거리생활 노숙인 보호시스템 구축 운영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사업시행주체	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외 5개소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지역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자활지원과	김종석 2133-7480	배기선 7482	이진산 7484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4년 예산액	2015예산액 (A)	2016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55,000) 694,242	(x40,000) 690,465	(x-) 993,465	(xΔ40,000) 303,000	(xΔ100) 43
사회복지사업보 조	(x55,000) 494,242	(x40,000) 490,465	(x-) 993,465	(xΔ40,000) 503,000	(xΔ100) 102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임시주거지원(월세) 450명*4개월*275,000 = 495,000천원
	○ 임시주거지원(사례관리) = 65,465천원
	- 인건비 1,500,000*1.03*3명*12월 = 55,620천원
	- 사회보장비(4대 보험) 55,620,000원*0.177 = 9,845천원
	○ 주거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= 433,000천원
	- 사례관리자 인건비(11명) = 433,0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초기지원으로 자립 가능한 신규노숙인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고시원, 쪽방 등을 지원해 탈거리노숙 및 자립을 유도하고,
- 시설 입소?이용자 중 자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, 주거독립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 유도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개선계획(자활지원과-5819, '12.4.30.)

□ 사업내용

- 장기 주거지원(그룹홈)

- 지원내용 : 임대보증금(호당 10백만원 이내) 및 사례관리비 지원
- 지원기간 : 2년(2년 단위 재계약 가능)
- 단기 주거지원(임시주거지원)
 - 지원내용 : 월세, 생활용품비, 주거유지 프로그램, 주민등록 복원 등 지원

□ **추진경위**

- '06 ~ '0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시행
- '10.10.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시행
 - 추진배경 :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노숙인 대책으로 추진
- '11.08. 혹한기·혹서기 임시주거지원 시행
 - 추진배경 : 서울역사내 노숙인 강제퇴거조치('11.8.22)과 관련한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으로 추진
- '12.04.30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 시행(연중상시사업)
- '12.07.01 :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시행
- 15.10.19 : 노숙인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계획 수립('16.1월부터)

□ **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**

- 노숙인 자활시설 수 감소(2015년 4개소 폐지)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지원 후 사례관리를 강화해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재노숙하는 위험을 제거

□ **사업추진절차**

- 집행절차
 - 단기주거지원(임시주거지원)
 - ▷ 대상자 선정 → 주거지원(쭉방, 고시원, 기타 거처) 및 사례관리(일자리 등 복지 서비스 연계)
 - 장기 주거지원(그룹홈, 매입임대주택) 사례관리
 - ▷ 권역별 사례관리자를 통한 주말 또는 야간의 사례관리 실시
 - ▷ 사례관리자 1인당 100가구 내외 대상자 관리
 - 장기주거지원(그룹홈)
 - ▷ 그룹홈 운영기관 모집 → 운영기관 신청 → 운영기관 선정 → 임대차 계약 → 예산재배정 → 보증금 배정 → 채권 양도양수계약 → 내용증명 발송 → 결과 보고 → 입주자 사례관리

□ **2016년도 추진일정**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993,465	

기본계획 수립	2016.01~2016.01	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16.01~2016.12	993,465	반기별 신청 및 교부(재배정)
보조금 집행 정산	2017.01		교부금 정산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3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시주거 : 월세 지원 572명(445명, 78%가 주거유지 중임), 생활용품 지원 572명 ○ 그룹홈 : 14호, 매입임대주택 66호 지원
2014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시주거 : 월세 지원 517명(425명, 82%가 주거유지 중임), 생활용품 지원 156명 ○ 그룹홈 : 9호, 매입임대주택 87호 지원
2015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시주거 : 월세 지원 303명(285명, 94%가 주거유지 중임), 생활용품 지원 245명 ○ 그룹홈 : 11호, 매입임대주택 36호 지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거리 노숙인에게 한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여 거리노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,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거리노숙 감소
- 시설 퇴소를 앞둔 노숙인에 대한 장기 주거지원(그룹홈)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재노숙을 예방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2	(x-) 571,000	(x-) 0	(x-) 0	(x-) 571,000	(x-) 521,620	(x-) 0	(x-) 49,380

2013	(x-) 585,627	(x-) 0	(x-) 0	(x-) 585,627	(x-) 437,055	(x-) 0	(x-) 148,572
2014	(x-) 639,242	(x-) 0	(x-) 0	(x55,000) 694,242	(x55,000) 482,380	(x-) 0	(x-) 211,862